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이광성 의원 외 3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551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08.09

라. 회부일자 : 2021.08.18

2. 제 안 사 유

-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급수관 인입구경 크기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건물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 기준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음.
- 이에 건물증축 시에도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'증축면적'이 아닌 해당 '구경'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건물증축에 따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해당 구경에 따라 산정함
(안 제7조제3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련 법령 :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건물증축 시 정액공사비 산정기준인 ‘증축면적’을 해당 ‘구경’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건물증축 시 해당 구경에 따라 급수공사 비용 산정(안 제7조제3항)

-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여 산출 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으며,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실제 급수공사비는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와 공사 연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은 바, 정액공사비에 실제 소요되는 급수공사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연면적과 세대수 등의 제한기준을 삭제한 바 있음.

기 준	개 정(2021.3.25.)
제7조(공사비의 계산방법)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,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.	제7조(공사비의 계산방법) ① -----, 그 금액-----.

-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건물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공사의 경우 여전히 ‘면적기준’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와 편차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됨.
- 따라서 안 제7조제3항과 같이 건물증축시에도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